

1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시 반드시 인적사항·연락처 확인

※ 수험표 출력 시 이면지사용 금지, 출력사항 외의 내용 기재 금지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의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공지된 입실시간 이외 입실불가, 신분증 미 지참 시 응시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실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복지카드,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정부24 앱 및 PASS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 * 상기 모바일신분증 외의 모바일 본인확인 수단,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수험자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험감독관 요청 시 앱에서 생성한 유효한 화면을 보여야 하며 답안지 배부시점까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되어 응시 불가함

3) 수험자는 시험 중 시각표시만 가능한 아날로그시계를 착용할 수 있으며, 추가 기능이 있는 개인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에 있는 시계는 참고용이고, 시험시간은 전적으로 타종(벨)에 따릅니다. 시험 종료 타종(벨)이 울리는 즉시 답안지 작성을 멈추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험 무효처리 됩니다.

4) 시험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지정된 자리에서 착석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시험감독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실하거나 전체 과목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 **응시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포기각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하고 제출 이후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이 무효처리 됨**

5) 소지품 정리시간에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책상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 가방 등에 정리하여야 하며 해당 교시 시험 종료시간까지 일절 사용 불가합니다.

6) 모든 통신 및 전자기기는 전원을 종료한 뒤 지정된 장소로 제출·보관하여야 합니다. 시험 중 전자기기 사용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및 전자기기 예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기타 카메라 또는 녹화 기능이 있는 기기, 기타 블루투스 등 통신이 가능한 기기, 기타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 등

7) 계산기는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에 한하여 시험 중 사용 가능하며, 수식저장 기능이 탑재된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학용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 회계용 계산기 등은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 불가**

8) 시험운영 중 시험감독관이 수험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잠시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 모든 수험자는 시험감독관, 본부요원 등의 지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0) 장애인, 임산부 등의 시험약자가 응시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원서접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시행 기관에 본인이 원하는 편의제공 항목을 알려야합니다.

※ **시험시행기관에서 응시편의 제공 여부 및 범위를 심사하여 개별 통보**

11)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 사례

- ① 시험 중 타인과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교환하는 행위
- ②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③ 시험 종료 전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를 시험실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④ 수험표나 책상 등에 시험 내용과 관련된 표시가 있는 경우
- ⑤ 시험 중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

12) 2차 시험 문제와 모범답안(해설서)는 비공개 사항으로 문제지를 외부로 가지고 갈 수 없으며,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 합니다. 기타 시험장(학교 등)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 시험 장비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법적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 공정한 시험을 위하여 수험자에게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1차 시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1) 답안지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 유형을 기재·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지 채점은 전산 판독결과에 따르며 문제지 형별 및 답안란의 마킹누락, 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 불완전한 수정처리,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수험자의 부주의나 유의사항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5) 답안지를 잘못 작성했을 시에는 답안지를 새로 교체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기재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6) 답안지를 훼손하거나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본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 시험이 영점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2차 시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 1) 답안지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답안지 작성은 정해진 필기구로만 작성해야 하며, 다른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영점처리 됩니다.
- 3)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배부된 답안지 및 문제지의 인쇄상태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말하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 4)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5) 지급한 재료가 있을 경우 시험 시작 전에 재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재료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장비(pc, 노트북, 현미경 등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 시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감독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7) 답안지를 훼손하거나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본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시험이 영점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처리규정

가. 부정행위자 처리

- 부정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8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나. 부정행위자 기준

- 부정행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과 같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해당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1) 시험 중 타인과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2) 시험 중 타인과 문제지 및 답안지 등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교환 하는 행위
 - 3) 시험 중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 4) 시험장 내·외의 자료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 등을 작성하는 행위
 - 5) 고의로 다른 수험자와 인적사항을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6)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8)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휴대용 카세트,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기타 카메라 기능 또는 녹화 기능이 있는 기기, 블루투스 등 통신이 가능한 기기, 기타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 등]를 사용하는 행위

- 9) 시험 종료 전에 문제지 및 답안지를 시험실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10) 시험문제가 비공개인 시험의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는 행위
- 11)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수험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는 해당 교시를 영점처리 또는 그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1) 지정된 시간까지 배정시험실에 입실하고 현장시험본부의 퇴실 안내가 있기 전까지 퇴실하지 아니할 것
 -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것
 - 3) 시험 시작 전까지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 4)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시험 중 소지하지 아니할 것
 - 5) 답안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 6) 시험시간 종료 타종(벨)이 울리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출 것
 - 7) 시험문제가 비공개인 시험의 문제 및 답안을 옮겨 적지 아니할 것
 - 8) 시험장소(학교 등)의 이용규정을 준수하고 시설상태를 시험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
 - 9)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